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안내

종합건설업



시설물 유지관리업



전문건설업



2021년 7월 1일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 전환이 시작됩니다.





(1) 업종전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?

- ▶ ① '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을 이미 등록한 사업자 또는
- ▶ ② '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

이떤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?

- ▲ ① 종합건설업: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 중 1개 업종 또는
- ② 전문건설업: ① 지반조성·포장공사업, ② 실내건축공사업,
 - ③ 금속창호·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, ④ 도장·습식·방수·석공사업,
 - ③ 철근·콘크리트공사업, ⑥ 상·하수도설비공사업 중 최대 3개 업종

(1) 업종전환 신청 및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신청서 작성 · 제출

- '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신청서*'를 작성하여 접수기관**을 방문하거나 우편 제출
- *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 → '행정규칙' → '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' 검색 → 별지 서식 다운로드
- ** 종합으로 전환 시: 대한건설협회 시도지회 전문으로 전환 시: 시군구청

사업자

접수 및 처리

 \downarrow

신청서 내용 및 업종전환 자격 유무 확인 후 건설업관리시스템에 신청내용 등록 · 처리

※ 처리기간: 10일

건설업 등록기관 (지자체 · 대한건설협회)

업종전환 처리현황 확인 업종전환 신청 처리현황은 '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 (https://kiscon.net)'에서 확인하거나 업종전환 접수기관에 직접 문의 필요

사업자

실적전환 신청

 \downarrow

사업자는 업종전환 처리 시 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종전 실적 확인 및 전환('21년 9월경 시스템 오픈)

* 시스템은 사업자인증서를 통해 접속

사업자

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

필요시 사업자는 지자체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요청

사업자



업종전환 일정 및 전환한 업종으로 입찰 기능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?

- 》(업종전환 일정) '21년 7월 1일 ~ '23년 12월 31일
 - № '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 미신청 시 시설물업 말소
- 》(입찰 가능 시점)
 - ('21년 신청 시) 2022년 1월 1일 이후
 - ('22년 · '23년 신청 시) 건설업 등록기관의 업종전환 처리일 이후
- 》(입찰 가능 공사)
 - 기존 유지보수 공사 외에 신축 공사도 참여 가능합니다.

(1) 업종전환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?

- ▶ (등록기준 유예)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유지시 '26년 12월 31일(일정 기준* 충족 시 '29년 12월 31일)까지는 전환한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.
 - * (기준) ●'25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보유업종 평균액 미만이고, ❷'23~'25년 동안 평균 실적이 3억원 미만인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
- ▶ (실적전환) 종전 실적을 토목과 건축분야로 구분하여 한 분야의 실적을 가산* 받거나 토목/건축 분야 구분없이 종전 실적을 모두 전환할 수 있습니다.
 - * ('21년 신청) 50% 가산, ('22년 신청) 30% 가산, ('23년 신청) 10% 가산
 - ▶ 구체적인 실적전환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 (☎ 044-201-3497, 3572)으로 문의바랍니다.

종합건설업으로 전환 시,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탈퇴하고 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해이하는지?

▶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유지해도 보증 가능하므로, 전문건설공제조합 탈퇴 및 건설공제조합 가입 여부 등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 바랍니다.



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업종전환이 29년까지 유예되는 것이 아닌가요?

- ▶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.
 - 국민권익위원회는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'29년까지 유지하고, 등록기준을 갖추고 업종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.
 - * 권익위원회도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폐지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.
- ▶ 이 경우 업역개편으로 인해 유지보수 공사 수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기 업종전환을 통한 업무범위 확대가 곤란해져 업계에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.
 - 따라서, 국토교통부에서는 당초 기준대로 '21.7월부터 업종전환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.

문의·상담

- **업종전환 세부기준 및 실적전환 기준**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 (☎ 044-201-3497, 3572)
- 업종전환 교육영상 시청
 유튜브(www.youtube.com) 접속 → '건설정책국' 검색 → '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교육'
- 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(https://kiscon.net, 실적전환 시스템) 접속 및 이용방법 건설산업정보센터 (☎ 02-3496-3830)